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1조제1항 중 “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32조, 제133조,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)”를 “원자력관계사업자”로 한다.

제133조제1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91조 제2항”을 “법 제9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1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9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1조제3항”을 “법 제9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1조(측정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. 이하이 조, 제132조, 제133조,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)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.	제131조(측정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33조(피폭관리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.	제133조(피폭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법 제9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”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	② 법 제91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도”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 한도를 각각 말한다. 제134조(피폭저감화 조치)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<u>법 제91조제1항 제4호</u>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(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서 원자력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제135조(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) <u>법 제91조제3항</u>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	----- -----. 제134조(피폭저감화 조치) ----- ----- <u>법 제91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35조(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) <u>법 제91조제4항</u>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